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2025. 10.

기획재경위원회

|| 목 차 ||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0. 23.
기획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이영빈 의원 외 8명(황국주, 고명욱, 정순옥, 최홍린, 권숙자, 서보영, 임미연, 장호섭)
- 발의일자: 2025. 10. 16.(목)
- 회부일자: 2025. 10. 16.(목)
- 상정 및 의결: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2025. 10. 23.)

2. 재정이유

-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사전타당성을 심의하는 공모사업 사전 심의위원회를 두어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공모를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모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7조)
-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심의대상 공모사업 관련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지방자치법」 제130조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5. 10. 16. ~ 10. 21.) 결과: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재정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구성된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과도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와 행정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우리 구의 공모 및 평가사업은 2022년 121건, 2023년 108건, 2024년 113건으로 추진되었으며, 이 중 구비 1억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은 각각 13건, 6건, 10건으로 연도별 변동이 있는 편임.
- 주요내용으로
 - 안 제6조는 공모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재정협약, 사업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 대상사업으로 구가 신청한 구비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과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한 사업 중 구비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고,
 -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 3명과 전문가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안 제9조는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던 절차를 개선하여 공모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변경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모사업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을 예방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